



예산사업 조정위원회 규정

제 정 일	2016. 7. 1
개 정 일	2020. 2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기획예산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각 학년도 예산의 편성, 집행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사업조정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각 행정처·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경영·회계 관련 전공 교수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 (개정 2020. 2. 1)
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. (신설 2020. 2. 1)
- 제 3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한다.
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4조 (기능)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매 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사업조정
 2. 주기적(반기 및 연간)인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
 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- 제 5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
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 6조 (회의록)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 ②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.
- 제 7조 (간사) ① 위원회는 회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직원으로 한다.
- 제 8조 (자료협조) 위원장 및 위원은 예산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부서는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 9조 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